

## ◇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7-104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제1호·제5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4항,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전파연구소고시 제2007-89호(2007.11.2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전파연구소장

###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제1호·제5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4항,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이 면제되는 기기)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면제되는 정보통신기기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또는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이하. 단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는 예외로 한다
2.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 1대

제3조(목록으로 제출할 수 있는 부품의 범위) 규칙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명칭·형식기호·  
기능(성능)이 같은 제품(모듈을 포함한다)이나 부품에 한한다.

제4조(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는 기기의 범위 등) 규칙 제5조제3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
2.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

제5조(하나 이상의 인증대상기기에 대한 처리절차 등) ①규칙 제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인증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  
의 인증신청은 단일건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인증대상별 시험성적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방법 등) ①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규칙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처  
리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2. 규칙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법 제45조의 규  
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는 전파연구소에서 정하는 형식검

정 및 형식등록처리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1대의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온·상습의 정격전압하에서 주파수허용편차, 공중선전력, 스프리어스발사강도 및 점유주파수대역폭 등을 시험 적용할 수 있다.

3. 규칙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 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의 적합여부는 전파연구소에서 정하는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및 전자파보호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4. 규칙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적합여부는 전파연구소에서 정하는 전자파흡수율(SAR) 표준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기를 시험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기기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기기부호등) ①규칙 제5조제1항 별지제1호서식의 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기부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하는 전기통신기자재 : 별표1

2.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별표 3제2호가목의 기호 준용

3.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별표2

②규칙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정하는 형식기호의 표시는 별표3과 같다.

제8조(변경신고의 범위 등) ①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의 변경으로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장에게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부품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단 형식승인은 기간통신망 및 전원부에 관련 있는 부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기준(IEC-60950) 1.5절의 부품, 1.6절의 전원인터페이스, 2.9절의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거리에 해당하는 항목, 기기 외관의 구조물(엔클로우져)의 구조·재질 또는 인쇄회로 기판의 재질변경(형식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완제품으로 인증 받은 기기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체,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단 형식승인 및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구성품의 제거는 제

외하며, 형식등록·형식검정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최초 인증 받은 정보통신기기에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변경과 동시에 모델명을 추가하는 경우

5. 외형의 변경

가. 형식등록기기중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나. 형식승인·형식검정·형식등록 기기중 원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10%이상의 칫수·형상의 변경

②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변경 또는 추가로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델명 변경 및 추가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의 변경 및 추가

3.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목에 의하여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의 양도·합병·분할된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상호명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

③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2.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기기인증서 원본(우편으로 반납 가능)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서 원본(우편으로 반납 가능)

제9조(사후관리 대상기기의 확보 등) ①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정보통신기기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중인 기기는 현지에서 선정한 후 인증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반입 또는 유통현장에서 직접 구매
2. 유통 대기중인 기기는 인증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보관장소에서 선정하여 반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상 정보통신기기의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하며, 기기 선정 및 반입에 필요한 시험대상기기 반입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사후관리시험 등) ①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기기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기기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목의 측정사항에 대하여 상온의 정격 전압 하에서 시험을 실시하되 제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가. 주파수

나. 정격출력

다. 스푸리어스 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 대역폭

마. 전계강도(규칙 제3조제3항 및 별표3제6호·제14호의 기기에 한한다)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기기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목의 시험환경조건 및 시험항목에 따라 실시하되 제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가. 전자파장해방지시험은 방사시험 및 전도시험을 실시하며 방사시험은 규정된 야외시험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대용시험장(10m법)에서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야외시험장과 대용시험장과 대용시험장의 시험결과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결과 상이할 때에는 야외시험장의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나. 전자파보호시험은 정전기방전 및 전기적빠른과도현상 등을 할 수 있다.

3.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시험은 제6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②소장은 성능 이외의 인증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인증 받은 정보통신기기의 구조·설계·형식 등이 임의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2. 변경신고한 기기의 적합성 여부
3. 기타 관계규정의 이행여부 등

③인증을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반입 또는 구매한 기기의 처리) 소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 또는 구매한 정보통신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한 정보통신기기는 시험결과 통보시 반환
2. 구매한 정보통신기기는 「체신관서 물품관리세칙」에 따라 처리

##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사후관리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사후관리 시험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부호

(제7조제1항제1호관련)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1. 단말기기류	전화기(헤드셋전화기 포함)	A11
	다기능 전화기(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A12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A13
	코드없는전화기	A14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A15
	영상전화기	A16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A17
	공중전화기	A18
	<u>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lt;삭 제&gt;</u>	<u>A19 &lt;삭 제&gt;</u>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A20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A21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A22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A23
	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	A24
	무선 모뎀	A26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A32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 금자동취급기 등)	A33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A34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A35
	코덱	A36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 방식 기기)	A41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 기기	A42
	비상통보기기(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A4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A44
	원격제어기기	A45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A51
	회선장애 감시기기	A52
	가입자보호기	A53
	ISDN 망종단기기(NTE)	A61
	ISDN 단말기기(ISDN전화기, 터미널어댑터, S인터페이스카드 등)	A62
	ISDN 다기능기기(ISDN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팩시밀리, SDN라우터 등)	A63
	접속커넥터	A71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기	A81
	인터넷전화기(IP전화기)	A82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3. 회선종단장치 류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B99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C11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C12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C13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C14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C21
	근거리(LAN)전송장치, 원거리(WAN)전송장치(통신망에 직접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C31
	PCM단국장치	C4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C99
	4. 전송망 기자 재류	진폭변조기
<u>주파수변조기</u>		D12
주파수변조기(무선)		D13
텔레비전신호처리기		D14
증폭기		D21
분기기		D22
분배기		D23
보호기		D24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u>삭 제</u> <u>삭 제</u> 동축케이블 케이블모뎀 직렬단자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송망기자재류)	<u>삭 제</u> <u>삭 제</u> D41 D51 D61 D99

[별표 2]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할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부호

(제7조제1항제3호관련)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1. 컴퓨터류	퍼스널컴퓨터	A011
	노트북컴퓨터	A012
	사무용컴퓨터	A013
	공업용컴퓨터	A021
	산업용컴퓨터	A022
	대형컴퓨터	A023
	중형컴퓨터	A024
	소형컴퓨터	A025
	판타컴퓨터	A026
	워크스테이션	A027
	서버	A031
	터미널	A032
	포스시스템	A033
	포터블컴퓨터	A034
	네트워크컴퓨터	A035
	일체형컴퓨터	A036
	범용컴퓨터	A037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류)	A900
	2. 컴퓨터주변기 기류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가. 출력장치	모니터	B011
	LCD모니터	B012
	TFT모니터	B013
	PDP모니터	B014
	프린터	B021
	플로터	B022
	프로젝터	B023
	카드리더기	B024
	분배기	B031
	공유기	B032
	나. 입력장치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출력장치류)
마우스		C011
키보드		C012
드래프팅-머신		C013
PC 게임기		C014
조이스틱		C015
디지털카메라		C021
디지털비디오카메라		C022
PC 카메라		C023
스캐너		C031
바코드스캐너		C032
지문인식기		C033
전자철판		C034
디지털타이저		C041
터치스크린		C042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다. 저장장치	트랙볼	C043	
	타블렛	C044	
	복합기기	C045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입력장치류)	C900	
	외장형 HDD	D011	
	외장형 FDD	D012	
	외장형 CD ROM DRIVE	D013	
	외장형 CD-RW DRIVE	D014	
	외장형 DLT DRIVE	D015	
	외장형 DAT DRIVE	D016	
	외장형 TAPE DRIVE	D017	
	외장형 광자기디스크 드라이브	D018	
	디스크어레이	D019	
	RAID	D021	
	쥬크박스	D022	
	MP3 PLAYER	D023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 장장치류)	D900	
	라. 콘트롤러	스위치	E011
		허브	E012
컨버터		E013	
콘트롤장치		E014	
리피터		E015	
이더넷아답터		E016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영상처리시스템	E02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않은 콘트롤장치류)	E900
마.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주변기기류	F900
3. 컴퓨터내장구성품류		
가. 보드	마더보드	G011
	VGA카드	G012
	사운드카드	G013
	TV수신카드	G014
	인터페이스카드	G015
	CONTROL카드	G016
	RISER카드	G017
	LAN카드	G021
	이더넷카드	G022
	전원보드	G03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보드류)	G900
나. 저장장치	HDD	H011
	FDD	H012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CD-ROM DRIVE	H021
	CD-RW DRIVE	H022
	DVD DRIVE	H023
	DAT DRIVE	H024
	DLT DRIVE	H025
	TAPE DRIVE	H026
	광디스크 DRIVE	H027
	ZIP DRIVE	H028
	JAZZ DRIVE	H02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치류)
다. 전원공급기	전원공급기	I01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원공급기류)	I900
라.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J900
4. 유선통신단말기기류	팩시밀리기기	K011
	모뎀	K012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K013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K014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K015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K016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코덱	K017
	G4팩시밀리	K018
	전화교환기	K021
	데이터교환기	K022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K023
	구내교환기(PBX)	K024
	ATM교환기	K025
	키폰시스템	K026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K027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K031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	K032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K033
	광전송장치	K034
	PCM단국장치	K035
	케이블모뎀	K041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유선 통신 단말기기로서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라고 인정하는 기기)	K900
5. 고속철도기기류	고속철도기기류	L011

[별표 3]

## 형식기호의 표시

(제7조제2항관련)

### 1.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구 분 \ 항 목	기 종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방 식	주 파 수	송·수신의구별	전 력	전 파 형 식	채 널
경보자동수신기	○	○	○	○	○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	○	○	○	○			○		
무선방위 측정기	○	○	○	○	○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경보자동전화장치	○	○	○	○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	○	○	○	○		○	○	
단측파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더(자동레이더푸룻팅장치를 제외한다)	○	○	○	○		○		○	○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더에 부가하는 자동레이더푸룻팅장치	○	○	○	○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	○	○	○		○	○	○	○	○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	○	○	○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중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	○	○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중 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





## 2. 형식에 관한 기호

구분	내 용		기호
가. 기종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		W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확정기가 동작하는 것		WA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WB
	무선전화경보 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정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WC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L
무선방위 측정기	의무비치용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DC
	임의비치용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A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B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DCA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A
경보자동전화장치			T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I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항공이동업무의 기기		SSS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SS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S
선박에 설치 하는 무선 항행을 위한 레이다	제1종 레이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34Cm이상	RAL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4Cm미만	RAM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	RAS
	자동레이다푸룽팅 기능을 가진 제1종 레이다		RAA
	제2종 레이다		RB
선박에 설치 하는 무선 항행을 위한 레이다	제3종 레이다		RC
	제4종 레이다		RD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에 부가하는자동레이다 푸룽팅장치		RP

구분	내 용	기호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VA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선박국용	SA
	해안국용	SB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SN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MF·HF송수신장치	SH
	VHF송수신장치	SV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MF전용수신기	MR
	MF·HF전용수신기	HR
	VHF전용수신기	VR
네비텍스수신기		NR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SR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a href="#">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a>	<a href="#">SE</a>
	<a href="#">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a>	<a href="#">SD</a>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파수공용방식의 기기	ETRS
	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 기기	E
기상원조용 리디오존데 및 라디오 로보트의 기기		P
라디오부이의 기기		B
F1D·G1D·F2D·G2D·F3E·G3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 및 수신 장치의 기기(형식검정대상 기기를 제외한다)		V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H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A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MCA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MCA1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a href="#">MCA2</a>
	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a href="#">MCA3</a>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a href="#">MCA4</a>
	기 타	<a href="#">MCA9</a>

구분	내 용	기호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PCS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PCS1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PCS2
	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PCS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PCS4
	기 타	PCS9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DATA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육상용	CCCA1
	해상용	CCCA2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 기기	CCCA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B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MCP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기		GMPCS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HF대 기기	HAM1
	VHF/UHF대 기기 등	HAM2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RLS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 기기	2.3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WLL1
	26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WLL2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ERT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CATV1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CATV2
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AIS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MT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IMT1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IMT2
	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IMT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IMT4
	기 타	IMT9

구분	내 용	기호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LPD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WIBRO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LB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LARN1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LARN2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3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LARN4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5
	중계용 무선기기	LARN6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LARN7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8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LARN9
RFID/USN용 무선기기	900 MHz 대역 사용 기기	RFID1
	433 MHz 대역 사용기기	RFID2
	13.56 MHz 대역 사용기기	RFID3
<u>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u>	<u>4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u>	<u>MICS4</u>
<u>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u>	<u>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u>	<u>SRD24</u>
코드없는 전화기	아날로그방식 1형	CLP1
	아날로그방식 2형	CLP2
	<u>1.7 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u>	<u>DCP17</u>
	<u>2.4 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u>	<u>DCP24</u>
<u>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	<u>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u>	<u>UWB1</u>
	<u>57~64 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u>	<u>SRD1</u>
나. 용도	육상건조물 안에서 사용하는 것	I
	육상건조물 밖에서 사용하는 것	O
	상기 외의 특수한 조건하에 사용하는 것	S

구분	내 용		기호	
다. 사용 환경	0℃ 내지 (+)40℃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1	
	(-)10℃ 내지 (+)50℃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2	
	(-)20℃ 내지 (+)50℃ 까지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3	
	(-)15℃ 내지 (+)50℃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		4	
라. 합격자	신청인의 <u>성 또는 상호</u> 를 표시하는 영문자 1자			
마. 방식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기		무선전신경보 신호로서 동작하는것	1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부가확성기또는 부가가청경보기를 갖는것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는 것	2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	3
		부가확성기또는 부가가청경보기를 갖지 않는것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는 것	4
			항행경보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	5
	구명정용휴대 무선전신기기	전원에 수동발전기를 사용하는 것		LC
		전원에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		LB
	무선방위측정기	척각식		DE
		브라운관식		DB
		지시계식		DM
		자동방위측정기		DA
		기타		DX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송신 및 수신설비의기기	고도 9,000m이상에서 사용하는 것		AA
		고도 6,000m이상 9,000m미만에서 사용하는 것		AB
		고도 6,000m미만에서 사용하는 것		AC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의기기 · 경보자동전화 장치	해면에서 사용하는 것		IB
구명정 · 단정 또는 구명벌에서 사용하는 것		IL		

구분	내 용		기호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605.5 KHz이상 26,175KHz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것		1
	무선통신규칙 부록 제18호의 표에 기재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것		2
	기타		3
수색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의 기기	이탈장치에 장치하는 것		1
	기타		2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	물에서 사용하는 것		1
	기타		2
주파수측정장치	헤테로다인방식		FH
	개수식		FC
	동조형		FR
	감시장치		FM
	기타		FX
기상원조국용 송신설비의기기	라디오존데		PS
	기상용 라디오로봇트		PR
라디오부이의 기기	선택호출장치가 있는 것		1
	기타		2
무선호출국용 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 및 수신 장치의 기기	자가통신용		PA
	공중통신용		PB
이동가입 무선전화통신을 하는 육상이동업무용의 송수신장치	디지털방식		D

구분	내 용		기호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아날로그 방식	A
		디지털방식	D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동기식	S
		비동기식	AS
바. 주파수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대상기기의 전체	<p>1. " /"의 상란에 최저주파수, 하란에 최고주파수를 MHz단위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송신 및 수신 주파수 범위가 다를 때에는 먼저 송신주파수를 기입하고 다음에 수신주파수 순으로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T,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R"로 표시한다.</p> <p>2. 단일주파수 또는 2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는 그 주파수의 각 첫째숫자로 구성되는 숫자를 표시한다</p>	
사. 송신·수신의 구별	송신장치의 경우에는 T, 수신장치의 경우에는 R로 표시한다.		
아. 전력	신청전력은 W를 단위로 한 숫자(신청전력이 1,000W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KW를 단위로 한 숫자로 표시한다. 그 숫자 표시에 있어서는 그 숫자 앞에 올 기호가 숫자인 경우에는 앞의 숫자와의 사이에 “—”을 삽입한다. 이 경우에 구비전파의 전력이 서로 상이한 2개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순차로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 순의 “, ” 로, 전력이 가변일 경우에는 “최소전력/최대전력” 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자. 전파 형식	전파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한다.		
차. 채널	채널수는 그 수를 표시하고 그 숫자앞에 기호로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간에 “—”을 삽입한다.		
<p>&lt;비 고&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기호를 모두 표시한다.</li> <li>2. 기종과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li> <li>3. 기종이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기종에 대하여 모든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 기종부터는 기종 앞에 “+”를 삽입하고, 사용 환경 및 합격자를 생략한 나머지 해당 항목을 기재한다.</li> <li>4. 방식이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방식에 대하여 모든 해당항목을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 방식부터는 “+”를 삽입하고 기종, 용도, 사용 환경 및 합격자를 생략한 나머지 해당항목을 차례로 기재한다.</li> </ol>			

[별지 제1호서식]

## 시험 대상기기 반입요구서

(제9조제2항 관련)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기의 명칭		기기의 모델명	기기번호
인증번호		인증연월일	
담당공무원	성명 :	전화번호 :	
<p>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0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을위한세부운영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대상기기로 결정되었으니 위 기기를    년    월    일까지 전파연구소로 반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전파연구소장 (인)</p>			

---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기의 명칭		기기의 모델명	기기번호
인증번호		인증연월일	
실무담당자	부서명 :	성명 : (인)	전화번호 :
<p>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0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을위한세부운영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확인시험을 위하여 위 기기를    년    월    일까지 귀소에 반입토록 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파연구소장 귀하</p>			